의안번호		제283	33호
의	결	2024.	
연 월	일	(제	회)

#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성군수
제출연월일	2024. 8. 27.

##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2833호

제출연월일: 2024. 8. 27. 제 출 자: 고 성 군 수

#### 1. 개정이유

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상위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4조제1항)
  - · "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"→"수립·시행할 수 있다"
-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"성별"에 관한 자료수집 및 분석도 포함시킴 (안 제4조제2항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4조의3

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
· [복지지원과-27080호(2024. 7. 5.)] : 검토의견 반영

조례안	수정안(검토의견)	검토결과
□ 제4조제2항제2호	□ 제4조제2항제2호에	□ 제4조제2항제2호에
	성별구분항목 신설을 제안함	성별 구분 항목 반영
	에 한 함 	

## 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4-1136호
  - 가) 예고기간: 2024. 6. 26. ~ 2024. 7. 16. (20일간)
 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 · 구조문대비표: 붙임
- 5) 비용추계(미첨부 사유)서: 붙임
- 4. 본문: 붙임과 같음.

고성군조례 제 호

##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 제목 "(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)"을 "(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"를 "수립·시행할 수 있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"지역·업종별"을 "성별, 지역·업종별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)	제4조(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)
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	①
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	
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	
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고성군	
산업재해예방대책(이하 "예방	
대책"이라 한다)을 <u>매년 수립ㆍ</u>	<u>수립·시행할</u>
시행하여야 한다.	<u>수 있다</u> .
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	②
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<u>지역</u>	2 <u>성별,</u>
<u>·업종별</u> 실태 자료수집 및	<u>지역·업종별</u>
분석	
3. ~ 8. (생 략)	3. ~ 8. (현행과 같음)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재정수반요인

○ 해당사항 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2호
 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# 3. 미첨부 사유

○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

작성자: 안전관리과장 김성영

## 참고

## 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## □ 산업안전보건법

제4조의3(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**자체 계획의 수**립, 교육,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-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.